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9,715,661	9,591,470
일반회계	307,036,322	9,211,090
특별회계	12,679,339	380,380
기타특별회계	12,679,339	380,380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662,278	19,86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19,294	54,5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9,602	20,08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266,465	37,994
주차장특별회계	8,252,470	247,574
기반시설 특별회계	9,230	2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994,1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번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